

항목: 학생 발행: 07/05/13 번호: A-240
제목: 학생 퇴교 사유 페이지: 1 중 4

개요

본 규정은 2000년 9월 5일자 교육감 규정 A-240을 대체한다.
본 규정은 뉴욕시 공립 학교 전학 및 퇴교에 관한 정책을 규정한다.

서문

학생은 일단 한 번 학교에 등록하면 본 규정에 정의된 적법한 사유에 의해서만 학교 학적부에서 제거될 수 있다. 전학(transfer)은 학생이 교육청 산하의 한 학교나 프로그램에서 교육청 산하의 다른 학교나 프로그램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한다. 퇴교(discharge)란 학생이 뉴욕시 공립학교 시스템에서 완전히 나가는 것을 말한다. 이 때 학교는 모든 퇴교 사유를 명시하고 전학, 퇴교, 졸업 (“TDG”) 지침에 의거해 졸업관련 서류(해당될 경우) 등의 퇴교의 근거가 되는 모든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. 본 지침은 <http://schools.nyc.gov/RulesPolicies/GraduationRequirements/default.htm> 에서 볼 수 있다.

I. 전학(TRANSFERS)

- A. 학생이 뉴욕시의 한 공립학교나 프로그램에서 다른 학교나 프로그램(고등학교 대안 프로그램(GED) 포함)으로 옮겨가면 전에 다니던 학교 학적부에서 삭제될 수 있다.
- B. 학생이 주법에 의거하여, 그리고 홈스쿨링 중앙 오피스(Central Office of Home Schooling)의 승인을 받아 공립학교에서 홈스쿨링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전에 다니던 학교 학적부에서 삭제될 수 있다.

II. 퇴교(DISCHARGES)

학생이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퇴교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다음에 열거한 이유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이다. 이 때, 모든 퇴교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해당 학교에 학생의 졸업예정일 이후 6년간 보관해야 한다.

- A. 뉴욕시 밖으로 이사 간 학생은 퇴교될 수 있다. 학생이 미국이나 푸에르토리코 내에서 이사를 한 경우, 학교는 학생의 새 주소(거리, 시, 주)는 물론 학생이 새로 전학한 학교명을 알아서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. 만일 학생이 다른 국가로 이사 간 경우 학교는 학생이 이주한 도시 및 국가명을 알아내고, 미국 외의 국가로 이사하였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학부모¹가 직접 장식하고 담당 교직원이 증명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. 이 때 모든 관련 서류는 TDG 지침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 학생의 기록에 함께 보관하고 기록해 두어야 한다.
- B. 학교의 출석담당 교사나 기타 담당 교직원의 조사 후에도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학생은 학교에서 퇴교될 수 있다. 이러한 경우의 퇴교는 TDG 지침에 의거하여

¹ 본 규정 내에서 사용된 "학부모"는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 또는 학생과의 부모 자녀 또는 양육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뜻한다.

조사 결과 서류 제출 및 Children First Network (CFN) 출석담당 매니저의 승인이 난 후에 가능하다.

- C. 학생이 교육청 소속이 아닌 학교나 프로그램, 즉, 가톨릭 학교나 사립학교, 또는 학생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(IEP)에서 추천한 비 교육청 기숙학교 또는 기타 학교나 프로그램에 입학한 것이 확인되면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퇴교조치 될 수 있다. 이러한 사유로 학생을 퇴교시킬 때 학교는 TDG 지침에 의거하여 해당 학생이 새로운 학교나 프로그램에 등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입수할 책임이 있다.
- D. 금학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만 5세가 되는 아동으로서 현재 유치원에 등록된 아동의 학부모는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다음 학년도에 바로 1학년에 입학시키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. 이러한 경우 아동은 유치원에서 퇴교되며, 반드시 다음 학년도에 1학년으로 등록해야 한다. 이 때 학교는 학부모의 유치원 퇴교 요청에 관한 서류를 작성, 보관해야 한다.
- E. 학생이 기숙 기관이나 기타 뉴욕시 교육청에서 관리하지 않는 뉴욕시 외곽의 시설(예, 법원이나 정부기관에서 명령한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시설, 병원, 위탁 양육시설 입소 등)에 입학한 것이 확인되면 퇴교될 수 있다. 이러한 사유의 퇴교는 반드시 교육청 담당직원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TDG 지침에 의거하여 관련 입증 서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.
- F. 현재 유아원(Pre-K) 프로그램에 등록된 아동으로서 해당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만 4세가 되는 아동의 부모는 자녀를 자발적으로 유아원 퇴교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때 학교는 학부모의 유치원 퇴교 요청에 관한 서류를 작성, 보관해야 한다. 또한 해당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만 4세가 되는 아동으로서 학교에 20일 연속 결석한 아동은, 학교에서 TDG 지침에 의거하여 적절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통보조치를 취한 후에 퇴교될 수 있다.
- G. 17세가 되는 해 학년도²를 마친 학생은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퇴교할 수 있다. 17세가 되는 해의 학년도를 마쳤으나 20일 연속 학교에 결석한 학생은 해당 학교에서 적절한 통보조치를 취한 후에 퇴교될 수 있다.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사유 모두, 학교에서는 Planning Interview Form 및 Planning Interview Procedures Manual 에 나온 절차에 따라야 한다. 이 경우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이미 받지 않은 이상 만 21세 이전에 복학할 권리가 있다는 통지문을 문서로 받아야만 한다.
- H. 16세 또는 17세 학생은 학부모 동의서와 함께 풀타임 고용증명서가 있을 경우, 풀타임 취직을 위해 퇴교할 수 있다. 17세 이상의 학생은 군에 입대한 경우 퇴교할 수 있다.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사유 모두, 학교에서는 Planning Interview Form 및 Planning Interview Procedures Manual 에 나온 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. 또한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이미 받지 않은 이상 만 21세 이전에 복학할 권리가 있다는 통지문을 문서로 받아야만 한다.

² 각 학년도의 공식 시작일은 7월 1일이다.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17세가 되는 학생은 해당 학년도가 종료될 때까지 학교에 재학해야만 한다.

- I.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이전에 4 년제 대학 프로그램에 입학한 경우 TDG 지침에 의거하여 퇴교될 수 있다.
- J. 만 21 세 이상의 학생은 만 21 세가 되는 학년도가 종료되면 퇴교될 수 있다.
- K. 사망한 학생은 관련 서류로 입증절차를 거친 후 퇴교될 수 있다.
- L. 장애 학생은 만 21 세가 되는 해, 또는 유치원을 제외하고 최소 12 년 학교생활을 마친 후 아무 때나 뉴욕주 대안 졸업장을 받고 자발적으로 퇴교할 수 있다. 이러한 자발적 퇴교를 택한 학생은 반드시 만 21 세가 되기 전에 복학할 권리를 알리는 문서상의 통지문을 받아야 한다.
- M. 고등학교 학력 인증서(GED)를 받은 학생은 TDG 지침에 의거하여 퇴교될 수 있다. 고등학교 학력인증 졸업장을 받은 학생은 만 21 세가 되는 학년도가 종료될 때까지 학교에 계속 다니거나, 복학하여 일반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기 위해 학업할 수 있다.
- N. 고등학교 졸업 요건을 완수한 학생은 TDG 지침 및 고등학교 학업정책 참고 지침서(High School Academic Policy Reference Guide)에 의거하여 해당학교를 졸업생으로서 퇴교될 수 있다. 학교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뉴욕시 교육청 산하 학교 외의 타교에서 이미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은 퇴교될 수 있다.
- O. 만 17 세가 되는 학년도를 마친 일반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위험하거나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 교육감 규정 A-443 에 의거하여 교육장 공청회를 거쳐 퇴학조치 된 학생은 퇴교될 수 있다.

III. 문의

본 규정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십시오:

전화:
212-374-6095

Office of Safety and Youth Development
N.Y.C. Department of Education
52 Chambers Street – Room 320
New York, NY 10007

팩스:
212-374-5751